

법인 합병 [[] 인가 신청서]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합병 하러 는 법 인	갑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을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신 고) 내용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합병일자				
	합병사유				

「항공사업법」 제22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 [[] 인가를 신청] [[]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 방 항 공 청 장 귀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신고수리)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